KOSHA GUIDE C - 70 - 2012

- (타) 조명 설치 계획
- (파)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통로 확보 등
- (3) 우레탄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작업은 현장의 모든 협력업체(근로자)와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우레탄과 같은 단열재의 화재특성,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용접 등과 같은 화기사용 작업은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작업보다 선행 시공하는 등 화재예방을 고려한 작업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6) 인화성 물질, 가연성 가스, 유증기 및 부유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를 실 시하여야 한다. 또한,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화포 와 같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인화성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특히, 서로 다른 물질끼리의 접촉을 통해 발화나 폭발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,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·기구 및 공구류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8) 발포 후 성형된 우레탄폼은 가연성 물질로서 고온 또는 용접 불티 등의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용접 등과 같은화기작업 시에는 반드시 불티비산방지를 위하여 불꽃, 불티, 고온 등을 차폐할 수 있는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피복이 손상된 전기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 이완 등에 의한 발열이 되지 않도록 조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또한,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하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전원을 인출하고, 작업 중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